

신차 Car Care 서비스약관

TERMS OF SERVICE

1. 서비스 개요 - 신차 Car Care 서비스

- 서비스 발행자: ILK 및 ILK의 운영 플랫폼
- 서비스 보장 대상 차량
 - ILK를 통해 카케어 서비스를 가입하거나 판매, 리스 상품, 장기렌트로 고객에게 제공된, '보장 대상 제외 차량'을 제외한 국산 신차
 - '보장 대상 제외 차량': 영업용 차량, 경찰/군용/응급 차량, 경주용 차량, 영리를 목적으로 승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 택시, 버스, 전시용 차량, 정부 및 준정부기관 운영 차량
 - 리스 및 장기렌트의 경우 1년 이상의 장기 계약 차량에 한합니다.
- 서비스 보장 기간
 - 기본형: 구입한 차량의 출고일로부터 180일 혹은 주행거리 10,000km 중 선도래 시점까지
 - 고급형: 구입한 차량의 출고일로부터 1년 혹은 주행거리 20,000km 중 선도래 시점까지

2. 부품/담보별 보장내용 상세 및 한도

Part		사고 유형	서비스 유형	보상한도	보상횟수	총보상한도
[파츠케어] 차량부품 수리비용보장/ 타이어 교체비용보장	차체상부(보닛, 루프, 트렁크)	칩	수리	부품당 30만원 (타이어/휠, 사이드미러는 개 당 15 만 원)	부품별 1 회 (타이어/휠, 사이드미러는 1 회당 2 개 까지)	대 당 100 만 원
	차체측면 (휀더, 도어)	칩/덴트/스크래치	수리 또는 교체			
	차체하부(범퍼)	칩/덴트/스크래치	수리 또는 교체			
	전면 유리	칩/스크래치	교체			
	사이드미러	파손으로 인한 정상 작동 불가	수리 또는 교체			
	스마트키	도난, 분실, 파손	수리 또는 교체			
	타이어/휠	찢어짐, 구멍, 흠, 균열, 파손	수리 또는 교체			
[자기부담금케어] 자기부담금 지원비용보장	자동차 사고 자기부담금 보장		-	50 만 원	2 회	

- 타이어, 휠, 사이드미러는 개당 15만 원으로 각각 한도 적용하나 타이어와 휠이 단일 사고로 함께 파손 시 타이어와 휠을 1사고로 합쳐 15만 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고객 자기부담금>

- 파츠 케어: 수리 비용 또는 보상한도 중 낮은 금액의 20%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 자기부담금케어: 없음

3. 서비스 제공 기준 및 정의

- 차체
 - 칩(찍힘): 직경 30mm 이상 또는 깊이 3mm 이상
 - 덴트(함몰): 직경 150mm 이상 또는 깊이 3mm 이상
 - 스크래치(긁힘): 직경 150mm 이상 또는 깊이 3mm 이상
 - 범퍼 소재의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한 손상 없이, 투명코팅막 및 도장막만 손상을 입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음.
 - 수리 시 라디에이터 그릴 및 범퍼 내 센서류, 내·외장 부품품, 가니쉬, 액세서리, 사이드실, 사이드스커트, 스킴트플레이트 등 전조등, 후미등, 안개등 등은 보장에서 제외
- 차체 외
 - 전면 유리: 직경 1cm 이상의 또는 10cm 이상의 실금 파손

신차 Car Care 서비스약관

TERMS OF SERVICE

- 3) 타이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상합니다.
 - (1) 보장 차량을 운행하는 중 도로상의 위험요소에 의하여 담보 대상 타이어가 일반적인 펑크가 아닌 타이어가 재생 불가능한 상태로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 (2) 보장 차량을 운행하는 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손상이 발생한 경우
 - (3) 보장 차량이 서비스가입증명서 및 서비스약관에 기재된 주행거리에 도달하기 전에 타이어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 4) 휠: 타이어와의 접촉 부위가 직경 3cm 이상 파손 혹은 휠 표면 공간을 포함하여 연속된 스크래치가 15cm 이상 발생한 경우
- 5) 관련 용어 정의 및 보상 내용 등은 '4. 보장 내용 상세',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참고 요망

4. 보장 내용 상세

파츠케어 [차량부품 수리비용보장] - 차체(상부, 측면, 하부), 전면 유리, 사이드미러, 스마트키, 휠

- 1) 보장기간 중 가입자의 단독사고로 보장부품(타이어 제외)별 보상조건에 기재된 파손 또는 고장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품을 수리(수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동등한 성능으로 교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보상한도 내 보상)
- 2) 차대차 사고로 인한 손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3) 교체 및 수리 작업은 반드시 '서비스센터 및 정식 수리업체(공업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4) 상세 보장부위에 기재된 부품 외의 부품에 발생한 손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5)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6) 수리 전 사고 접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손상부위 복원 수리 및 교체 완료 후 사진 및 수리비 내역서 확인 후 수리비가 지급됩니다. 손상 부위에 대해 **심사 승인 전 선 수리한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앞유리 및 타이어는 사고 접수 전 선수리 가능
- 7) 본 서비스는 보장기간(1년) 이내 수리한 경우에 한하며 회사의 심사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 세부 서비스 보상 절차는 서비스 이용동의서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를 따릅니다

파츠케어 [타이어 교체비용보장] - 타이어

- 1) 서비스 보장기간 중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타이어 교체가 발생한 경우 교체비용을 보상한도 및 보상횟수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보장 차량을 운행하는 중 도로상의 위험요소에 의하여 담보대상 타이어가 일반적인 펑크가 아닌 타이어가 재생 불가능한 상태로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 (2) 보장 차량을 운행하는 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손상이 발생한 경우
 - (3) 보장 차량이 서비스가입증명서 및 서비스약관에 기재된 주행거리에 도달하기 전에 타이어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 2) '보장 차량'이라 함은 담보대상 타이어가 장착된 차량을 말합니다.
- 3) '도로상의 위험'이라 함은 움푹 패인 곳, 돌, 목재 부스러기, 금속조각, 플라스틱 또는 합성물 조각 등의 물체를 말합니다.
- 4) '교체비용'이라 함은 타이어 비용(기존의 타이어와 동일한 사양의 신품 타이어를 재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 (단, 부품별 보상한도 및 보상횟수를 따름)과 인건비(공임)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케어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지원비용보장]

- 1) 서비스에 가입된 고객이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게 발생한 비용손해를 서비스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자동차보험의 기명 피보험자가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영업용 제외)
 - (2) 고객이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
 - (3) 피보험자동차와 다른 자동차 간에 우연하고 급격한 차대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고객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고객의 과실비율이 확정(가해자 보험사와 피해자 보험사의 과실비율 확정을 의미합니다.)되어 사고 처리가 완전히 종결된 경우
- 2) 위 제1호의 비용손해는 고객에게 발생한 비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손해를 말합니다. 단,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부분에 한합니다.
 - (1) 차대차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보장 조건에 따라 발생한 자기부담금
 - (2) 차대차 사고로 인하여 사고 당일 지불한 택시 및 대중교통 비용

신차 Car Care 서비스약관

TERMS OF SERVICE

(3) 차대차 사고로 인하여 사고 당일 지불한 피보험자동차 차량 견인 비용

3)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기부담금 지원 서비스 제공시점(사고 발생 시점) 이전에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해지 및 취소 시
- (2) 자기부담금 지원 서비스 가입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이름, 연락처 등) 및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용어정의]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

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을 말합니다.

<피보험자동차>

자기부담금 지원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고객>

행사기간 중 피보험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자로서 자기부담금 지원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사람

<다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고객이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차대차 사고>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다른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와 영상기록장치 등으로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5. 보상하지 않은 손해

파츠케어 [차량부품 수리비용보장] - 자체, 전면 유리, 사이드 미러, 스마트키, 휠

- 1) 서비스 대상 차량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자(이하 "대상차량관리자"라 합니다) 단독으로 행해졌거나 서비스 대상 차량 관리자의 종업원, 임원, 협력자, 수탁자 또는 승인된 대표자에 의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행한 사기행위, 고의 또는 기망으로 인한 행위
- 2) 차량 제작사 또는 다른 보증 프로그램에서 보상되는 손해
- 3) 차량의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
- 4) 도난으로 인한 수리사항이 발생한 경우
- 5) 제작증명서나 통관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 6) 법령 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7) 차량제작자가 권고한 기본 유지관리 방안을 위배하여 발생한 사고
- 8) 차량 제작사의 운행능력 한계를 초과한 무리한 운행, 적재량 초과, 수리 지연에 의한 고장
- 9)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수리정비업체에 의한 수리 비용
- 10) 주행거리계의 고장, 임의 변조 또는 교체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1) 경주, 등판능력, 속도 및 내구시험 동안 발생한 손해
- 12) '서비스 보장 대상 차량'이 차량 본래의 용도 이외로 사용되거나 렌터카 및 데모카, 택시, 경찰차 및 군용차 등 긴급 목적 차량, 경주용차, 공공기관용 정보조달 차량 등으로 사용되는 차량
- 13) 픽업 및 배송, 유상운송, 적재물 운반이나 승객 수송, 견인, 도로보수, 건축, 제설 또는 기타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 14) 화재, 폭발에 의한 비용손해
- 15) 보장부품의 고장으로 인한 견인 비용, 휴업 손해 등 간접 비용
- 16) 타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사고 및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 17) 차량 제작사가 공고 또는 리콜을 통해 제조 결함에 대한 교환의 책임을 알린 경우
- 18)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19) 일반적 자연 마모로 인한 정상적 교체 주기에 따른 교체
- 20) 서비스약관에 기재된 서비스 면책사항

파츠케어 [타이어 교체비용보장] - 타이어

- 1) 아래의 사유로 생긴 타이어 교체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신차 Car Care 서비스약관

TERMS OF SERVICE

- (1) 담보 차량 운행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로 인한 교체
- (2) 일반적인 자연 마모로 인한 정상적인 타이어 교체 주기에 따른 교체
- (3) 차량 제작사 또는 다른 보증 프로그램에서 보상되는 교체
- (4) 차량 제작사가 공고 또는 리콜을 통해 제조 결함에 대한 교환의 책임을 알린 경우
- (5) 타이어 체인에 의해 발생된 손해로 인한 교체
- (6) 휠 얼라이먼트 및 편마모로 인한 교체
- (7) 국가, 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장한 도로 및 간선도로 외에서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교체
- (8)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된 교체
- (9) 타이어를 제외한 휠 또는 림(Rim) 자체의 교체비용 및 타이어 교체 시 추가로 이루어지는 휠 얼라이먼트, 휠 밸런스, 타이어 로테이션 등의 발생 비용
- (10)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 (11) 위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1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1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14) 화재, 폭발,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2) 아래의 차량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제조사 권장 제원상 고객의 차량에 맞지 않는 타이어 또는 휠을 장착한 차량
- (2) 픽업 및 배송, 유상운송, 운반, 견인, 도로보수, 건축, 제설 또는 기타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 (3) 경주용, 임대용, 리무진, 택시, 경찰, 구급차, 견인차, 구난차, 장의차 또는 기타 긴급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 (4) 포장도로용 승용 차량 외 차량
- (5) 비포장 도로용 타이어 및 휠을 장착한 차량

자기부담금케어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지원비용보장]

- 1) 서비스 대상 차량 고객의 단독 또는 타인과 공모를 통한 사기행위, 고의 또는 기망으로 인한 행위
- 2) 서비스 대상 차량 고객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3) 법령 위반(고의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발생한 비용
- 4) '서비스 보장 대상 차량'에 차량 전부손해사고로 발생한 비용
- 5) '서비스 보장 대상 차량'의 단독사고로 발생한 비용
- 6) '서비스 보장 대상 차량'에 보유불명사고로 인한 비용
- 7) 벌금 또는 과태료 비용
- 8) 결함 있는 '서비스 보장 대상 차량'의 회수(리콜(Recall))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 9)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발생한 비용
- 10) 화재, 폭발에 의한 비용

[용어정의]

<전부손해사고>

차량이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차량에 생긴 손해액과 자동차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자동차보험의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로 고객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전부손해기준에 따릅니다.

<보유불명사고>

자동차 사고 중 자기 과실이 없으면서 가해자도 밝혀지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예1)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서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차량 도난사고 및 자기차량사고

예2) 화재, 폭발 및 낙뢰에 의한 자기차량사고

예3) 기타 보험회사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